

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□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 이은림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 외 21명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
□ 동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효율적 조례 운영을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」와 「서울특별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일부 내용을 동 조례에 반영하여 유사 조례를 일원화하고자 하였습니다.

□ 이는 법적 일관성을 확보하여 법의 이해와 적용을 원활히 하며, 일원화된 조례 운영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함입니다.

□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

안 제2조에 수요자 중심의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체계를 구성
을 기본이념에 추가하고

안 제3조에 “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”과 “에너지 참여형 소비자”를 정의했습니다.

안 제18조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설치기준 마련
을 규정하고

안 제29조에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를 위한 행정·재
정적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.

□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, 원안대로
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